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이 윤 상

1. 머리말
2. 일본의 한국 황실 보호에 대한 약속
3. 병합 이후 '조선 왕실'의 지위
4. 李王職의 설치와 그 기능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한국 황실 역시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황제였던 순종은 일본 천황에 의해 '왕'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고, 한국 황실은 '조선왕실'로 격하되었다. 그리고 '조선왕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李王職'이 설치되었다. '조선왕실'과 '이왕직'은 왕조체제의 해체과정과 함께 식민지 상황에서 전통 왕실이 어떻게 관리, 또는 이용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왕실'과 '이왕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 '망해버린 나라의 몰락한 왕조'라는 인식이 연구의 대상으로

---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할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05-A00012)

1) 신명호, 1996 「일제하 이왕직과 이왕가 족보」 『한국학대학원논문집』 11 (신명호, 1998 『조선의 왕』 가람기획에 수록)에서 이왕직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송기형, 1999 「'창경궁박물관' 또는 '이왕가박물관'의 연대기」 『역사교육』 72 ; 목수현, 2000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27 ; 최공호, 2001 「한국 근대공예사 연구 : 제도와 이념」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 이지선, 2004 「'직원록'을 통해서 본 이왕직의 직제 연구」 『동양음악』 26 등에서 이왕직박물관,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이왕직아악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삼는 것조차 가로막은 주요한 이유라 생각된다. 하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라고 해서 눈을 감아버린다면 한국근현대사연구는 여기저기에 허점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왕실'과 '이왕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 우선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변화과정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2. 일본의 한국 황실 보호에 대한 약속

1904년 러일전쟁의 도발을 앞두고 일본은 한국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동맹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 황실의 보전과 황제인 고종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세력인 재일 망명자(을미사변 관련 망명자) 문제의 해결을 약속해야 했다. 따라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3년 12월 주한일본공사 林勸助는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고종이 파견한 외부대신 임시서리 李址鎔을 맞이하여 '망명자는 일본 국법의 가능한 범위에서 엄중히 처분하고 高永根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寬典을 베풂',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의 유지에 관하여 일본의 성실한 원조를 요구하며, 事變時 한국, 특히 서울의 안전에 대해 일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細目은 외부대신과 일본공사가 협정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조약안 草案을 제시하였다.[2] 이지용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고종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고종은 아직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었던 듯하다.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교섭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립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3] 1904년 1월 중국 芝罘에서 한국의 '전시중립선언'이 각국에 타전되었고,

---

2) 『日本外交文書』 36-1, 774-775면, 韓廷高官ト連絡ノ件(1904. 12. 30)
한편 같은 날짜의 다른 전문에는 12월 22일 이전에 작성된 '公使 初案'이라 하여 '한일 양국은 국제상의 장애를 엄중히 조처하야 情誼를 완전히 소통할 것' '東亞大局의 평화에 관하여 만일 時變이 일어나면 한일 양국은 성실한 情誼로 상호 제휴하여 안녕질서를 영구히 유지할 것' '未備細目은 외부대신과 일본대표자 간에 협정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조약안이 수록되어 있는데(『日本外交文書』 36-1, 776-777면, 韓國ニ於ケル情勢ニ關シ意見上申ノ件(1904. 12. 30)), 이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가까운 것이고, 이지용에게 제시한 조약안은 동맹을 성사시키기 위해 林 공사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과 측근들은 이 중립선언에 기대를 걸었으나 러시아와 일본 등 당사국들의 무시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1904년 2월 8일 일본의 공격으로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 바로 다음날 대규모의 일본군이 서울로 들어오고, 러시아공사 파블로프가 철수하자, 고종은 더 이상 일본의 압력을 버텨낼 수 없었다. 결국 일본이 제시한 조약안에 약간의 수정을 요구한 끝에 2월 23일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시설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받아들일 것'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親誼로써 안전강녕하도록 할 것'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3국의 침해에 의해, 또는 내란 때문에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한제국 정부는 위의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의정서'가 조인되었다.[4] 이처럼 일본측에서 제시한 조약안에는 모두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 강녕과 영토의 보전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이는 러일전쟁에서 한국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1905년 9월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전후처리'에 착수하였다. 일본정부는 10월 각의에서 한국을 보호국으로 하는 내용의 '한일협약' 초안을 결의하고 伊藤博文을 한국에 파견하여 보호국화를 추진하였다.[5] 한국에 온 伊藤은 11월 15일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협약안'을 의정부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허락을 받아내고, 한국의 정부대신들을 강압한 끝에 11월 18일 새벽 조약의 체결을 선언하였다.[6] 이것은 일본 각의에서 결의한 4개조의 조약문에 제5조로 '일본

3)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서영희, 2003『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68-188면 참조

4)『日本外交文書』37-1, 345-346면, 日韓議定書公表ニ關スル件(1904. 2. 27)

5)『日本外交文書』38-1, 526-527면, 韓國保護權確立實行ニ關スル閣議決定ノ件(1905. 10. 27)

6) 을사조약 체결과정에 대해서는 서영희, 앞의 책, 210-211면 참조

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함'이라는 조항을 추가한 데 불과하였다.[7] 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1904년에 조인된 '한일의정서'에 들어있던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는 조항조차도 빠져 있는 것이었다.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을 기화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 해산, 사법권 이양 등 식민지화를 진전시킨 일본은 1909년 7월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삼기 위한 정책을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1910년 6월에는 한국에 대한 병합과 이후 식민지 지배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8] 병합을 완수할 임무를 띠고 통감으로 부임한 寺內正毅는 8월 16일 총리대신 李完用을 초청하여 병합조약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완용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한국'이라는 국호의 존속과 황제의 칭호를 '王殿下'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황제의 칭호만을 받아들였다.[9]

이러한 과정을 거쳐 8월 22일 '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겨줌', '일본 황제는 한국 황제, 태황제, 황태자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함', '일본국 황제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함', '일본국 황제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恩金을 줌' 등의 내용을 담은 병합조약이 조인되기에 이르렀다.[10]

---

7) 『日本外交文書』 38-1, 532-533면, 日韓協約調印濟幷ニ協約全文報告ノ件(1)(2)(1905. 11. 18)

8) 『日本外交文書』 42-1, 179-180면, 對韓政策確定ノ件(1909. 7. 6) ; 『日本外交文書』 43-1, 660면, 倂合後ノ韓國ニ對スル施政方針決定ノ件(1910. 6. 3)

9) 『日本外交文書』 43-1, 677-678면, 韓國倂合協定ノ爲韓國李總理ト第一回會見ノ件(1910. 8. 16) ; 『日本外交文書』 43-1, 678-679면, 倂合後ノ韓國皇帝ノ稱號及國號ニ關スル韓國側ノ希望承認方ノ件(1910. 8. 17)

10) 『日本外交文書』 43-1, 679-680면, 韓國倂合條約案御裁可奏請ノ爲全文報告ノ件(1910. 8. 20)

3. 병합 이후 '조선 왕실'의 지위

1910년 8월 22일 한국을 병합한 일본은 일주일 후인 8월 29일 천황의 詔書를 통해서 대한제국 황실의 지위를 공포하였다. 먼저 병합에 관한 조서에서 '한국 황제 폐하 및 황실 구성원은 병합 후라도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과 '조선 총독을 두고 짐의 명을 받아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제반 정무를 모두 관할케'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11] 한국 황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황제였던 순종을 '李王'으로, 고종을 '李太王'으로, 황태자를 '왕세자'로 각각 규정하였다.[12] 병합조약 체결과정에서 한국의 요구 가운데 유일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이러한 '왕'과 '전하'라는 호칭이었던 것이다.

> "짐이 무궁한 큰 토대를 넓게 하고 국가의 비상한 명예와 지위를 마련하고자 하여 전 한국 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고 昌德宮 李王이라 칭하니 후손들이 이 훌륭한 하사를 세습하여 그 제사를 받들게 하며, 황태자 및 장래 세습할 자를 왕세자로 하며, 太皇帝를 太王으로 하여 德壽宮 李太王이라 칭하고, 각각 그 배필을 왕비, 太王妃 또는 왕세자비로 하여 모두 皇族의 예로써 대하여 특히 殿下의 敬稱을 사용하게 하니, 대대로 따르는 방법에 이르러서는 짐이 마땅히 법도와 의례를 따로 정하여 李家의 자손으로 하여금 累代가 이에 의지하고 복과 祿을 더욱 편안히 하여 영구히 행복을 누리게 할지라. 이에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특별한 법을 밝히노라."

일본의 황실제도에서는 천황의 玄孫 이내의 후손은 親王으로, 5세 이후의 후손은 왕으로 책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천황과 황후에 대한 경칭이 '陛下'였고, 친왕과 왕에 대한 경칭은 각각 '高殿下'와 '殿下'였다.[13] 따라서 고종과 순종에게 내려진 '왕'이라는 지위와 '전하'라는 경칭을 보면 대한제국의 황실이 두 단계 격하되어 일본 천황가에 방계로 편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

11) 『朝鮮總督府 官報』 제1호(1910. 8. 29) 병합에 관한 일본 천황의 詔書(1910년 8월 29일)

12)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1910. 8. 29) 한국 황실의 지위에 관한 일본 천황의 조서(1910년 8월 29일)

13) 伊藤博文, 1936 『帝室制度資料』 秘書類纂刊行會(신명호, 앞의 책, 283-285면에서 재인용)

이 일본 황족에 편입된 것은 아니었다. '이왕'과 '이태왕', 그리고 '왕세자'는 황족의 예로써 대할 뿐, 즉 황족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을 뿐 조선에만 있는 '왕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같은 날 일본 칙령 제318호로 한국의 국호가 조선으로 변경되었으므로,[14] 이제 대한제국의 황실은 일본 천황의 책봉을 받는 '조선왕실' 또는 '이왕가'로 격하되었다. 이것은 과거 '조선 왕실'을 책봉하던 동아시아의 패권국가 明과 淸의 지위를 일본이 차지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義親王 李堈과 興親王 李熹(李載冕)에게도 다음과 같은 별도의 조서에서 '公'이라는 지위가 내려졌다.[15]

> "짐이 생각컨대 李堈과 李熹는 李王의 懿親으로 명성이 일찍부터 두드러졌고 온 나라에서 우러러 보고 있으니 마땅히 특별한 대우를 더 내려서 그 儀稱을 풍요롭게 할지라. 이에 특히 公으로 하고 그 배필을 公妃로 하여 모두 황족의 예로써 대하고 殿下란 경칭을 쓰게 하여 자손으로 하여금 이 영광의 하사를 세습하여 영구히 은총을 누리게 하노라."

義和君 李堈은 李垠과 함께 고종의 아들로서 1900년 8월 친왕제도의 도입에 따라 義親王과 英親王으로 각각 책봉되었고,[16] 完興君 李熹는 고종의 형으로서 1910년 8월 興親王으로 책봉되면서 본래 이름 載冕을 熹로 바꾸었다.[17] 이처럼 고종의 아들과 형으로서 대한제국 황실의 최상층부에 있던 이들이 이제 '王'도 아니고 '公'이라는 지위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황실은 '왕족'과 '공족'으로 구분되어 일본 황족의 대우를 받게 되었지만 일본 황족이나 화족에 편입된 것은 아니었다. '왕족'과 '공족'은 일본의 황족, 또는 화족이 아니라 조선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신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대해 '동화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조선인에 대한 권리의 부여에 인색하고 조선의 '일본화'에 대해 거부감을

---

14)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1910. 8. 29) 勅令 제318호(1910년 8월 29일)

15)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1910. 8. 29) 한국 황족의 지위에 관한 일본 천황의 조서(1910년 8월 29일)

16) 『高宗實錄』 1900년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17일 ; 『義王英王冊封儀軌』(奎13232)

17) 『純宗實錄』 1910년 8월 15일, 8월 24일, 8월 28일

가지고 있었던 데에서 드러나듯이 실상은 '차별정책'을 유지하였던 것이다.[18]

1912년 9월 '공'이었던 李熹가 사망하자 아들 李埈鎔의 이름을 埈으로 고치고,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게 하였다.[19] 이어 1917년 3월 李埈이 사망하자 李堈의 둘째 아들 李鍝를 양자로 삼아 그 지위를 계승하게 하였다.[20] 또한 '이태왕' 사망 이후인 1920년 4월에는 '李王職官制'의 '이왕'과 '이태왕'을 모시는 贊侍에 관한 조항(제6조) 중에서 '이태왕'을 '왕세자'로 개정하여 '왕세자'가 '이태왕'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하였으며,[21] '이왕' 사망 이후인 1926년 6월에는 '이왕직관제'의 같은 조항에서 '왕세자'를 삭제하여 '왕세자'가 '이왕'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하고, '왕세자'와 '공족'을 모시는 직원을 규정한 조항(제15조)에서 '왕세자'를 '故李王妃'로 개정하여 순종비가 '왕세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하였다.[22] 이렇게 조선의 '왕족'은 '왕족'으로, '공족'은 '공족'으로 지위가 계승되었던 것이다.

조선 '왕족'의 애매한 신분적 지위는 1916년 일본이 황족인 梨本宮方子 여왕(일본 황실에서 '왕'과 같은 지위에 있는 여자에 대한 敬稱)과 조선의 왕세자 李垠의 정략적인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걸림돌로 등장하였다. 일본의 『皇室典範』에서 '황족의 결혼은 同族 또는 勅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된 華族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황족인 方子는 황족이나 화족이 아닌 조선의 '왕족'과 결혼할 수 없었던 것이다.[23] 하지만 일본 천황이 이미 '이왕가'에 혼인 의사를 밝혔고 '이왕가'에서도 수락하였으므로 취소할 수도 없었다. 이 결

---

18) 일본이 표방한 '동화정책'의 의미와 실상에 대해서는 권태억, 2001 「동화정책론」 『역사학보』 172 참조

19) 『조선총독부 관보』 제39호(1912. 9. 16) 宮內省 告示 제5호(1912년 9월 10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46호(1912. 9. 25) 궁내성 고시 제7호(1912년 9월 20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46호(1912. 9. 25) 궁내성 고시 제8호(1912년 9월 20일)

20) 『조선총독부 관보』 제1,392호(1917. 3. 28) 궁내성 고시 제4호(1917년 3월 24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1,447호(1917. 6. 1) 궁내성 고시 제8호(1917년 5월 28일)

21) 『조선총독부 관보』 제2,299호(1920. 4. 13) 황실령 제3호 이왕직관제 개정(1920년 4월 7일)

22) 『조선총독부 관보』 제4,148호(1926. 6. 18) 황실령 제3호 이왕직관제 개정(1926년 6월 12일)

23) 鈴木正幸, 1993 『皇室制度-明治から戰後まで』 岩波書店 (류교열 역, 1998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13-115면)

혼은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추진된 것이었지만 '조선왕실'로서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처리를 둘러싸고 일본 황실과 정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국 1918년 11월 '황족 여자는 왕족 또는 공족에게 시집갈 수 있다'는 皇室典範增補의 조칙이 나오게 되었다.[24]

이처럼 조선의 '왕족'을 일본의 황족에 편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황족 여자는 '왕족'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식을 택한 것 역시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 '동화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1920년 4월 李垠 왕세자와 梨本宮方子 여왕의 결혼식이 열릴 수 있었다. 이 결혼에 즈음해서 조선인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실시되었고,[25] 조선 총독 齋藤實는 이른바 '內鮮一體'의 표본으로 선전하는 포고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26] 다음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의 아들(李晋; 8개월만에 사망)에게는 황족의 예로써 殿下라는 敬稱을 사용하게 하였다.[27]

한편 일본은 한국 황실의 지위를 규정하는 조서의 공포와 함께 皇室令 제14호로 '朝鮮貴族令'을 반포하여 왕실의 宗親이나 高官이었던 사람들에게 작위를 수여함으로써 이들을 식민지 지배의 보조세력으로 회유, 포섭하려 했다.[28] 조선귀족령은 '이왕'의 血族으로 황족의 예우를 누리지 않는 자와 문벌이나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公 侯 伯 子 男의 작위를 주어 '조선귀족'이라 하고 집안의 상속인 남자가 세습하게 하며 일본의 '華族令'에 따라 작위를 받은 자와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는 것이다.

明治시기 일본은 황실제도를 정비하면서 황실과 明治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호막이자 황실의 혈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華族制度를 함께 만들었다. 일본에 의회가 개설되면 民黨(야당)이 하원(중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황실과 정부를 지켜줄 상원(귀족원)의 설치가 요

24) 『순종실록』 부록, 1918년 11월 28일
25)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1920. 4. 28) 칙령 제120호 왕세자 李垠과 方子 여왕의 결혼에 즈음해 조선인에 대하여 특별히 은사를 행하는 건(1920년 4월 28일)
26)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1920. 4. 28) 조선총독 齋藤實의 諭告(1920년 4월 28일)
27) 『조선총독부 관보』 제2,712호(1921. 8. 24) 詔書(1921년 8월 18일)
28)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 호외(1910. 8. 29) 황실령 제14호 - 조선귀족령(1910년 8월 29일)

구되었고, 상원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가진 화족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1884년에 공포된 '華族令'으로 구래의 화족에 明治維新 유공자들을 포함한 새로운 화족을 탄생시켰다. 또한 황실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화족이 필요했다. 천황이 일본의 군주로서 부동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최고의 가문, 최고의 혈통이라는 명분에 입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황실은 언제나 그 혈통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때문에 『皇室典範』에서는 황족이 양자를 입양하는 것을 금할 정도였다. 천황과 황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버금가는 혈통의 가문이 필요했고, 세습 화족을 창출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29]

이러한 일본의 화족제도를 들여와서 한국의 종친과 고관 출신을 '조선귀족'으로 대우함으로써 회유, 포섭하려는 것이 '조선귀족령'이었고, 이에 따라 일본 '宮內省官制'도 기존의 화족 아래에 '조선귀족'을 첨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30] '조선귀족' 역시 화족과 같은 예우를 받기는 하지만 일본 화족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조선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신분이었다. 한국의 상층 인사들을 회유하려는 조치는 전국적인 '은사금'의 지급으로 이어졌고,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3천만엔의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였다.[31] 같은 해 10월 7일에는 '조선귀족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친과 고관 출신들에게 작위가 수여되었다.[32]

후작 - 李載完, 李載覺, 李海昌, 李海昇, 尹澤榮, 朴泳孝
백작 - 李址鎔, 閔泳璘, 李完用
자작 - 李完鎔, 李埼鎔, 朴齊純, 高永喜, 趙重應, 閔丙奭, 李容稙, 金允植, 權重顯, 李夏榮, 李根澤, 宋秉畯, 任善準, 李載崑, 尹德榮, 趙民熙, 李秉武, 李根命, 閔泳奎, 閔泳韶, 閔泳徽, 金聲根
남작 - 尹用求, 洪淳馨, 金奭鎭, 韓昌洙, 李根湘, 趙羲淵, 朴齊斌, 成岐運, 金春熙,

29) 鈴木正幸(류교열 역), 앞의 책, 66-69면
30) 『조선총독부 관보』 제5호(1910. 9. 2) 황실령 제18호 궁내성관제 개정
31)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1910. 8. 29), 칙령 제327호 및 칙령 제329호(1910년 8월 29일)
칙령 제327호 - 조선에서 하는 임시 恩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3,000만 엔에 한하여 5푼 이자부로 國債를 발행할 수 있다
칙령 제329호 - 조선에서 하는 임시 恩賜는 明治 43년 칙령 제327호에 의거하여 발행한 國債證券으로써 내려 준다
32) 『순종실록』 부록, 1910년 10월 7일

趙同熙, 朴箕陽, 金思濬, 張錫周, 閔商鎬, 趙東潤, 崔錫敏, 韓圭卨, 兪吉濬, 南廷哲, 李乾夏, 李容泰, 閔泳達, 閔泳綺, 李鍾健, 李鳳儀, 尹雄烈, 李根澔, 金嘉鎭, 鄭洛鎔, 閔種默, 李載克, 李允用, 李正魯, 金永哲, 李容元, 金宗漢, 趙鼎九, 金鶴鎭, 朴容大, 趙慶鎬, 金思轍, 金炳翊, 李冑榮, 鄭漢朝

병합에 따라 한국 황실에 '왕족'과 '공족'의 신분을 부여하고 '조선귀족령'과 은사금으로 상층 인사들을 회유한 일본은 마지막 統監이자 첫 총독인 寺內正毅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포고를 내려 천황의 조치를 칭송하면서 병합이 마치 한국인을 위한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33]

지금부터 전 한국의 황제 폐하는 昌德宮 李王 殿下라 칭하며 황태자는 왕세자가 되시고 後嗣가 길이 서로 계승하고 만세무궁할지며 太皇帝 폐하는 德壽宮 李太王 殿下라 칭하여 이처럼 황족의 예우를 내리시고 그 급료가 넉넉함은 황제의 지위에 있을 때와 다름이 없을지라. 조선 민중은 모두 제국의 臣民이 되어 천황 폐하가 어루만져 기르는 교화를 입고 영구히 깊고 넓은 仁德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특히 충순하게 新政을 보좌할 어진 사람은 그 공로에 준하여 영예로운 작위를 수여하시며 은사금을 내리시고, 또 그 재능에 따라서 제국 관리나 혹은 中樞院 議官의 반열에 세우며 혹은 중앙이나 지방 관청의 직원에 등용케 하심이라.

4. 李王職의 설치와 그 기능

병합에 따라 한국 정부의 기능은 정지되었고, 대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 일체의 정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만 기구를 정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종래 한국 정부에 속한 관청은 內閣과 表勳院을 제외하고 모두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하여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속한 관리들도 한국 정부에 근무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하였다.[34] 또한 한국의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되었으므로 황실 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도 해체되었지만, 그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당분간 조선 총독의 감독 아래에서 '왕족'과 '공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35]

33)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1910. 8. 29), 統監 寺內正毅의 諭告(1910년 8월 29일)
34)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1910. 8. 29), 칙령 제319호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1910년 8월 29일)
35) 『조선총독부 관보』 제5호(1910. 9. 2), 황실령 제20호 전 한국 궁내부에 관한 건

1910년 12월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왕가'('조선왕실')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이왕직의 관제가 마련되고, 1911년 2월 이왕직의 업무가 시작되었다.[36] 이왕직은 일본의 황실업무를 담당하는 宮內省의 하부기구로 宮內大臣의 감독을 받아 조선 '왕족'과 '공족'의 집안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李王職官制

제1조 李王職은 宮內大臣의 관리에 속하여 王族과 公族의 家務를 관장함이라.

제2조 이왕직에 다음의 직원을 둠이라.

長官 次官 事務官 贊侍 典祀 典醫 技師 屬 典祀補 典醫補 技手

제3조 長官은 1인이니 勅任으로 함. 이왕직 일체의 사무를 모두 관리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이라.

제4조 次官은 1인이니 勅任으로 함. 장관을 보좌하여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함이라.

제5조 事務官은 36인이니 奏任으로 함. 그 중에 3인을 勅任으로 하여 庶務를 分掌함이라.

제6조 贊侍는 12인이니 奏任으로 함. 그 중에 2인을 勅任으로 하여 李王과 李太王을 가까이 모셔서 신상의 일을 분장함이라.

제7조 典祀는 8인이니 奏任으로 함. 名譽官으로 하여 祭祀와 墳塋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이라.

제8조 典醫는 6인이니 奏任으로 함. 진찰과 약 조제 및 위생의 일을 분장함이라.

제9조 技師는 3인이니 奏任으로 함. 건축, 토목 및 원예에 관한 기술의 일을 분장함이라.

제10조 屬은 判任으로 함. 庶務에 종사함이라.

제11조 典祀補는 判任으로 함. 祭祀에 종사함이라.

제12조 典醫補는 判任으로 함. 醫務에 종사함이라.

제13조 技手는 判任으로 함. 건축, 토목 및 원예의 기술에 종사함이라.

제14조 李太王에게는 事務官 7인과 贊侍 3인과 典醫 2인과 屬 및 典醫補를, 왕세자에게는 事務官과 贊侍와 典醫 각 1인과 屬 및 典醫補를, 公族에게는 事務官 각 2인과 屬을 분속케 함이라.

부칙 本令은 明治 44년(19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함이라.

이왕직에는 장관과 차관,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관, 측근에서 모시는 贊侍, 제사를 담당하는 典祀, 의무를 담당하는 典醫, 건축·토목을 담당하는

(1910년 8월 29일)

36) 『조선총독부 관보』 제106호(1911. 1. 9) 황실령 제34호 李王職官制(1910년 12월 30일)

技師, 서무를 담당하는 屬 등의 관리가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이태왕' '왕세자' '공족'에게 分屬되었다.

이렇게 이왕직이 설치되면서 종래 황실 사무를 담당했던 궁내부의 업무는 모두 이왕직으로 이관되었고, 이왕직의 업무 개시 하루 전인 1911년 1월 31일자로 궁내부대신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해직되었다.[37] 고용원으로 파면된 자가 340여 명이었고 員役으로서 해산된 자는 326명이었다고 한다.[38] 또 이들 실직자에 대해서는 親任官 1명 1,150원, 勅任官 17명 7,100원, 奏任官과 같은 대우를 받는 자 36명 5,365원, 判任官과 같은 대우를 받는 자 49명 3,692원, 고용원 310명 9,640원 등의 특별 위로금 26,947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급하였다.[39]

한편 이왕직의 설치와 함께 그 직원의 봉급은 일본의 '宮內官官等俸給令'에 따르고, 이들의 임용과 해직 등 인사문제는 '宮內官任用令'에 따르며, 소관 업무의 처리는 '宮內官分限令'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같은 날짜로 이들 규정도 개정되었다.[40] 그리고 이왕직의 경비는 恩給遺族扶助料와 퇴직 관리에 대한 하사금을 제외하고는 '이왕'의 歲費로 지출하며, 그 수지는 조선 총독이 감독하고, 예산과 결산은 조선 총독의 심사를 거친 후 궁내대신이 인가하도록 규정되었다.[41] 이들 규정에 의하여 조선에서 이왕직의 사무와 이왕직 직원은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왕직은 실질적으로는 일본 궁내성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관할 아래 있었던 셈이었다.

이왕직의 업무를 상세하게 규정한 다음과 같은 사무분장규정도 공포되었

---

37) 『조선총독부 관보』 제124호(1911. 1. 31) 조선총독부 훈령 제7호(1911년 1월 31일)

38) 『순종실록』 부록, 1911년 1월 31일

39) 『순종실록』 부록, 1911년 3월 22일

40) 『조선총독부 관보』 제106호(1911. 1. 9) 皇室令 제35호 宮內官官等俸給令 개정(1910년 12월 30일) ; 황실령 제36호 조선에 근무하는 조선인 궁내관 봉급에 관한 건(1910년 12월 30일) ; 황실령 제37호 宮內官任用令 개정(1910년 12월 30일) ; 황실령 제38호 宮內官分限令 개정(1910년 12월 30일) ; 황실령 제39호 조선에서 이왕직의 사무 및 조선에 근무하는 이왕직 직원에 관한 건(1910년 12월 30일)

41) 『조선총독부 관보』 제106호(1911. 1. 9) 황실령 제40호 이왕직의 경비의 지출과 李王 歲費의 收支 감독에 관한 건(1910년 12월 30일)
이에 따라 이왕직에서 퇴직하는 관리에 대한 扶助料와 賜金에 관한 규정도 『조선총독부 관보』 제106호(1911. 1. 9) 황실령 제41호 조선에 근무하는 궁내관의 恩給遺族扶助料와 退官賜金에 관한 건(1910년 12월 30일)으로 공포되었다.

다.[42] 이에 따르면 이왕직은 庶務係, 會計係, 掌侍係, 掌祀係, 掌苑係 등 5개의 係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적인 업무와 경리를 담당하는 서무계와 회계계가 모든 관서에 당연히 설치되는 것이라면, 이왕직의 특징은 '왕족'과 '공족'에 대한 近侍를 담당하는 掌侍係, 왕실 조상에 대한 제사와 陵墓의 관리를 담당하는 掌祀係, 궁궐의 정원과 창경원에 있던 박물관·동물원·식물원을 관리하는 掌苑係를 두었다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近侍, 제사와 陵墓 관리, 정원과 창경원 관리가 이왕직의 주요 기능이었던 것이다.

이왕직 사무분장규정

제1조 李王職에 다음의 각 係를 두어 사무를 분장한다.

庶務係 會計係 掌侍係 掌祀係 掌苑係

제2조 庶務係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贈答에 관한 사항 2. 王家의 譜牒, 詞章, 古印 및 簿冊類를 맡아 지키는 일에 관한 사항 3. 장관 차관의 官印 및 職印을 맡아 지키는 일에 관한 사항 4. 궁궐 규칙이나 기타 중요한 공문서의 초안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공문서류의 접수, 발송, 편찬, 보관 및 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 6. 도서의 보관, 출납 및 열람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거취와 신분에 관한 사항 8. 앞의 각 사항 외에 달리 係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 會計係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재산에 관한 사항 3.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 4. 궁궐, 정원 및 昌德宮 안에 있는 廳舍와 모든 그 부속 건물을 맡아 지키는 일에 관한 사항

제4조 掌侍係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昌德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 2. 창덕궁의 진찰 약제조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창덕궁 궁녀에 관한 사항 4. 창덕궁의 식사 및 향연에 관한 사항 5. 의식 빈객 접대 및 車馬 사용에 관한 사항

제5조 掌祀係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祭祀에 관한 사항 2. 廟, 殿, 宮 및 墳塋을 맡아 지키는 일에 관한 사항 3. 雅樂에 관한 사항

제6조 掌苑係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에 관한 사항 2. 동물원에 관한 사항 3. 식물원에 관한 사항

제7조 李太王 소속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德壽宮의 신변에 관한 사항 2. 덕수궁의 진찰 약제조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덕수궁의 서무 회계에 관한 사항 4. 덕수궁 안에 있는 궁궐(石造殿과 惇德殿을 제외함) 廳舍와 모든 그 부속 건물을 맡아 지키는 일에 관한 사항

42) 『순종실록』 부록, 1911년 2월 1일, 이왕직 사무분장규정

5. 기타 덕수궁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8조 왕세자 소속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昌德宮 왕세자의 신변에 관한 사항 2. 창덕궁 왕세자의 진찰 약 제조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서무 회계에 관한 사항

제9조 公族 소속 직원은 각 공족 집안의 서무 회계를 관장한다.

본 규정은 明治44년(19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설립 당시 庶務係, 會計係, 掌侍係, 掌祀係, 掌苑係 등 5개의 係로 이루어졌던 이왕직의 구성은 1915년 3월 궁궐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主殿課와 임업·농장·종마목장·우유장 등을 관리하는 農事課가 신설되면서 1司 6課(장시사, 서무과, 회계과, 주전과, 제사과, 농사과, 장원과)로 개편되었다.[43] 이러한 조직은 1916년 6월 儀式課의 설치(1司 7課), 1918년 6월 농사과의 폐지와 主殿課의 營繕課로의 개칭(1司 6課)을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44] 그러나 1919년 '이태왕' 사망 이후 이왕직의 기구와 직원은 대폭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 4월에 많은 직원을 감축한 데 이어,[45] 11월에는 기구를 장시사, 서무과(부속 掌苑室), 회계과, 예식과 등 1司 3課로 대폭 축소하면서 물가의 비등과 '이왕가'의 歲費 부족을 이유로 고등관 이하 23인을 감원하였던 것이다.[46]

이왕직은 대한제국기에 황실 사무를 관장하던 宮內府를 계승한 것이다. 궁내부는 갑오개화파정권의 왕실과 정부 분리방침에 따라 1894년 6월 왕실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들을 모아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궁내부 소속 기구들이 많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무질서한 상태였으나 1895년 이후 점차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소속 기구도 확대되었다.[47] 특히 대한제국기에 들어오면서 궁내부의 확대는 놀라울 정도였다. 〈도표 1〉은 대한제국기(1896~1904년)의 궁내부 소속 기구를 정리한 것인데, 이처럼 대한제국기의 궁내부는

43) 『순종실록』 부록, 1915년 3월 24일

44) 『순종실록』 부록, 1916년 6월 10일

45) 『조선총독부 관보』 제2,299호(1920. 4. 13) 황실령 제3호 이왕직관제 개정(1920년 4월 7일) ; 『동아일보』 1920년 4월 9일자

46) 『순종실록』 부록, 1920년 10월 30일, 1920년 11월 19일

47) 갑오개혁기 궁내부의 설립과 궁내부 소속 기구에 대해서는 이윤상, 1997 「1894~1895년 개화파정권의 재정제도 개혁」 『국사관논총』 77 참조

황실의 위상을 높이고 전제황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구는 물론, 근대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구까지도 대거 흡수하면서 議政府를 능가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더욱이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이미 의정부에 존재하는 데도 궁내부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궁내부의 확대는 당시의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 업무의 상당 부분은 의정부의 각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들이었으므로 행정체계의 혼란과 업무추진의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도표 1> 대한제국기(1896~1904년)의 宮內府 소속 기구

- 宮 內 府
  - 大臣官房
  - 內事課→文書課(1900. 12 改稱)
  - 調査課(1900. 12 신설)
  - 外事課(1900. 12 폐지)
  - 種牧課(1896. 10 신설, 1899. 8 內藏院으로 이속)
  - 飜譯課(1899. 6 신설, 1900. 12 폐지)
  - 水輪課(1899. 8 內藏院에서 이속, 1902. 4 水輪院으로 승격)
  - 內大臣(1899. 6 신설)
  - 特進官
  - 侍從院
  - 秘書院
  - 經筵院→弘文館(1897. 1 改稱)
  - 奎章院→奎章閣(1897. 1 改稱)
  - 掌禮院
    - 協律課→敎坊司(1900.6 改稱)
    - 稽制課(1902.7 신설)
  - 禮式院(1900. 12 신설)
    - 外務課 飜譯課 文書課 會計課
  - 宗正院
  - 貴族院→敦寧院(1900. 12 개칭)
  - 會計院
  - 典醫司→太醫院(1897. 1 改稱)
  - 奉常司
  - 典膳司
  - 尙衣司 織造課(1904. 7 신설)
  - 內藏司→內藏院(1899. 8 개칭)
    - 莊園課(1899. 8 신설)
    - 貢稅課(1900.9 신설, 1902.4 工業課로 改稱)
    - 記錄課(1900. 9 신설)
    - 種牧課(1899. 8 宮內府에서 이속)
    - 典牲課(1902. 4 신설)
    - 蔘政課(1899. 12 신설)
    - 水輪課(1899.1 신설, 1899.8 宮內府로 이속)
  - 御供院(1904. 5 신설, 1904. 7 폐지)

- 濟用司(1904. 7 신설)
- 水輪院(1902.4 宮內府 水輪課에서 승격, 1904.1 폐지, 農商工部로 移屬)

- 綏民院(1902. 11 신설)
- 平式院(1902. 7 신설, 1904.1 폐지, 農商工部로 移屬) 總務課 檢定課
- 西北鐵道局(1900. 9 신설, 1904. 8 鐵道院으로 合併)
- 博文院(1903. 2 신설, 1904. 1 禮式院 博文課로 개편)
- 礦學局(1902. 2 신설)
- 鐵道院(1900.4 通信司 鐵道課에서 승격)
  - 鐵道課・文書課・會計課(1901. 5 신설) 鐵道課를 庶務課로(1902. 9)
- 警衛院(1901. 11 신설) 總務局-警衛課, 文書課, 訊問課, 會計課
- 管理署(1902. 4 신설, 1904. 1 폐지, 內部로 移屬)
- 秘苑(1903. 12 신설)
- 主殿司
- 營繕司
- 太僕司
- 物品司(1896.6 신설)
- 通信司(1899. 6 신설)
  - 電話課(1899. 6 신설)
  - 鐵道課(1899. 6 신설, 1900.4 鐵道院으로 승격)
- 王太后宮→明憲太后宮(1897. 12 改稱, 1904. 1 폐지)
- 王后宮→皇后宮(1897. 12 改稱)
- 王太子宮→王太子宮侍講院(1897. 1 개편)→皇太子宮侍講院(1897. 10 개칭)
- 王太子妃宮→皇太子妃宮(1897. 12 改稱)
- 皇太孫宮講書院(1903. 12 신설)
- 親王府(1900. 8 신설)
- 西京 豊慶宮(1903. 11 신설)
- 圜丘壇祠祭署(1897. 10 신설)
- 宗廟署
- 景孝殿(1898. 10 신설)
- 社稷署
- 永禧殿
- 景慕宮
- 肇慶廟 慶基殿 華寧殿 璿源殿 穆淸殿 太極殿 各陵園宮 洪陵

[出典]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Ⅱ, Ⅲ의 布達 제6호~제124호 宮內府官制 개정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국내외 정세가 변하면서 궁내부는 크게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1904년 1월 궁내부 소속인 水輪院·平式院·管理署 등의 정부 移屬, 같은 해 8월 서북철도국과 철도원의 통합 등은 이전부터 계속된 궁내부 기구의 방만함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황실관련 부서와 황실재정의 문란함을 지적하는 여론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압력 또한 거셌기 때문에 황실제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48] 더욱이 갑오개혁 때 왕권이 약화되고 왕실재정이 정부재정의 산하로 편입되었던 경험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황실 스스로 황실제도와 황실재정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04년 10월 황실제도 전체에 대한 정리를 준비하는 기구로 帝室制度整理局이 설치되었다.[49] 1905년 1월 23일부터 실제 업무를 시작한 제실제도정리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당시 궁내부 고문이었던 加藤增雄이었는데, 그는 1890년대에 주한 일본영사와 공사를 역임했던 인물로서 후에 대한제국의 농상공부 고문이 되었다가 1904년 9월부터 궁내부 고문을 겸임하고 있었다.

제실제도정리국의 활동을 바탕으로 1905년 3월에 '宮內府官制'가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거기에 규정된 궁내부 소속 기구들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도표 2〉 이다.

<도표 2> 1905년의 궁내부 소속 기구

- 侍從院　庶務課
- 秘書監
- 奎章閣
- 弘文館

48) 中樞院 議官 安鍾悳은 內藏院에서 역둔토·인삼·광산·漁場·염전 등의 收稅를 담당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元帥府·內藏院·禮式院·御供院·英親王宮 등이 불필요한 기구이므로 폐지하자고 주장하였으며(『고종실록』 1904년 7월 15일), 奉常司 副提調 宋奎憲도 元帥府·內藏院·禮式院·秘苑·濟用司 등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종실록』 1904년 7월 25일).

49)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Ⅲ, 682면 詔勅 帝室制度整理局을 설치하는 건(1904. 10. 5)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Ⅲ, 683면 帝室制度整理局 職務章程(1904. 10. 5) ; 『帝室制度整理局日記』(奎13037)

[出典]『한말근대법령자료집』Ⅳ, 45-59면 布達 제126호 宮內府官制 개정(1905. 3. 4)

여기서 눈에 띄는 변화는 鐵道院·礦學局·博文院·綏民院·平式院·通信司 등 정부에서 담당해야할 업무를 취급했던 기관들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기관은 대한제국기에 근대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었던 기관들로서 의정부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었으나 고종의 의도에 따라 궁내부에 소속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활동은 미미하였고, 또 이들 기관이 궁내부, 즉 황실에 소속된 데 대해서 내외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으므로 우선적으로 폐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황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재편된 궁내부 조직은 1910년까지 대체로 유지되었다.

비교를 위해 당시 일본 宮內省의 조직을 살펴보기로 하자.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宮內省官制'를 토대로 작성한 일본 宮內省의 기구는 〈도표 3〉과 같은데, 1905년의 대한제국 궁내부와 마찬가지로 황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3> 1908년의 일본 宮內省 소속 기구

宮內省 - 大臣官房
|
侍從職(近侍; 侍從長, 侍從職幹事, 侍從, 次侍從)
式部職(典式 및 交際 ; 式部長官, 式部次官, 式部官)
- 掌典部(祭事; 掌典長, 掌典次長, 掌典, 內掌典, 掌典補)
- 樂部(樂事; 部長, 樂長, 樂師)
內藏寮(재정 및 회계)
圖書寮(황실 문서 및 도서; 編修官 專任 三人(주임)을 둠)
爵位寮(爵位, 華族 및 有位者)
侍醫寮(診候 進藥 調劑 및 위생; 侍醫, 侍醫補, 醫員, 藥劑師長, 藥劑師, 藥劑員)
大膳寮(供御 및 饗宴; 主膳長, 主膳)
諸陵寮(陵墓)
主殿寮(宮殿廳舍 및 附屬建物의 管守와 警察)
- 警察部(皇宮警視長, 皇宮警視, 皇宮警部)
內匠寮(建築 및 土木; 技師 및 技手)
內苑寮(庭苑 및 園藝; 技師 및 技手)
主馬寮(馬匹, 車輛 및 牧場; 車馬監, 調馬師, 馬醫師, 馬醫, 技師, 技手)
主獵寮(狩獵 및 獵場; 主獵官)
調度寮(物品 購入, 整備 및 雜役)

[비고]
1) 궁내성에 宮內大臣(親任), 次官(1인, 勅任), 祕書官(傳任 2인, 奏任), 書記官(傳任 4인, 주임), 翻譯官(전임 3인, 주임), 屬(270인, 判任), 궁중고문관(25인, 칙임 명예관)을 둠
2) 各寮에 頭(각 1인, 칙임), 主事(각 1인, 內藏寮 및 主殿寮 주사는 각 2인, 侍醫寮 주사는 3인, 모두 주임, 侍醫寮 主事는 侍醫를 兼함)를 둠

[出典] 『(日本)官報』 1907. 11. 1, 皇室令 제3호 宮內省官制(1907년 10월 31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한제국의 궁내부와 일본의 宮內省은 황실의 위상을 높이고 황실 관련 업무와 황실재정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기구와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과 비교해보면 이왕직은 보잘 것 없는 기구였다.

1911년 5개의 係로 출발하여, 1916년 1司 7課가 되었다가, 1920년 이후에는 1司 3課로 대폭 축소된 채로 유지되었으며, 직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된 것과 함께 궁내부도 이왕직으로 축소되어 近侍와 제사, 창경원 관리 등의 기능만을 겨우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왕직은 초대 장관을 閔丙奭, 차관을 小宮三保松으로 하여 1911년 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50] 이후 〈도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재극, 민영기, 한창수, 篠田治策, 이항구 등이 이왕직의 장관을, 國分象太郎, 上林敬次郎, 篠田治策, 이항구, 兒嶋高信 등이 이왕직의 차관을 역임하였다.

<도표 4> 이왕직의 역대 장관과 차관

장 관	차 관
閔丙奭(자작, 1911. 2)	小宮三保松(1911. 2)
李載克(남작, 1919. 10)	國分象太郎(1917. 1)
閔泳綺(남작, 1923. 3)	上林敬次郎(1921. 9)
韓昌洙(남작, 1927. 4)	篠田治策(1923. 2)
篠田治策(1932. 7)	李恒九(남작, 1932. 7)
李恒九(남작, 1940. 3)	兒嶋高信(1940. 3)

[出典] 『조선총독부 관보』 1911. 2. 7, 1917. 1. 19, 1919. 10. 25, 1921. 9. 21, 1927. 4. 13, 1940. 3. 15 ; 『순종실록』 부록, 1917년 1월 16일, 1919년 10월 20일, 1921년 9월 16일, 1923년 2월 24일, 1923년 3월 1일

<도표 5>는 이왕직에 소속된 직원의 담당업무와 등급,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황실령으로 공포된 '이왕직관제' 개정 사항과 宮內省令으로 공포된 이왕직 판임관 정원 개정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51] 도표에

50) 이외에 이왕직 설립 당시 사무관으로는 高羲敬, 李會九, 李恒九, 李謙濟, 金奎熙, 高羲誠, 津輕英麿(이상 고등관 3등), 李起泓, 兪致衡, 金澤基, 玄百運(이상 고등관 4등), 多田桓, 蜷川新, 金東完, 金觀鎬, 林文太郎, 李龍漢, 嚴柱承(이상 고등관 5등), 尹世鏞, 靑山淺治郎, 村上龍吉, 權藤四郎介, 劉燦, 徐相璿(이상 고등관 6등), 朴敍陽, 增田英信, 黑崎美智雄, 末松雄彦, 佐伯達, 趙東源, 李仁用, 尹喜求, 金相昱, 崔鍵濚, 安淳煥, 李容汶(이상 고등관 7등) 등이, 이왕직 贊侍로는 子爵 尹德榮, 男爵 金春熙(이상 고등관 2등), 李弼均(고등관 5등), 李喬永, 嚴柱日, 尹迥求(이상 고등관 6등), 金璜鎭, 金永甲, 徐丙協, 李恩雨, 李聖默, 李圭元(이상 고등관 7등) 등이 임명되었다(『순종실록』 부록, 1911년 2월 1일).

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왕직의 직원은 계속 줄어들었는데, 특히 하급직원으로서 실무를 담당하는 판임관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더욱이 1919년 '이태왕'의 사망과 1926년 '이왕'의 사망은 이왕직의 近侍 기능은 물론, 궁궐을 관리하는 기능마저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의 '이왕직관제'에서는 12인의 贊侍를 두어(3인은 '이태왕'에게, 1인은 '왕세자'에게 각각 分屬) '이왕'과 '이태왕', '왕세자'를 近侍하도록 했는데, 1916년 6월 이왕직에 掌侍司를 설치하면서 10인이 되었다가(5인은 掌侍司에, 4인은 '이태왕'에게, 1인은 '왕세자'에게 각각 分屬),[52] 1919년 '이태왕'이 사망한 후에는 近侍의 대상이 축소되었으므로 1920년 4월에 개정된 관제에서 찬시를 6인으로 줄여 '이왕'과 '왕세자'를 近侍하도록 했다.[53] 그리고 '이왕'이 사망한 후인 1926년 6월에 개정된 관제에서는 '왕세자'를 삭제함으로써 새로운 '이왕'만을 近侍하도록 하였으나, 1928년 8월의 '이왕직관제' 개정에서는 '왕족'과 '공족'을 近侍하는 찬시라는 직책을 없애고 제6조를 아예 삭제함으로써 이왕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近侍 업무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54]

한편 이보다 앞서 1907년 순종의 창덕궁 移御에 맞춰 바로 옆의 창경궁에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을 개설하고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하였고, 1911년 4월에는 창경원으로 이름까지 바꾸었으며, 1919년 고종의 사망 이후 덕수궁의 많

51) '이왕직관제'와 이왕직 판임관 정원의 개정에 따라 宮內官任用令과 宮內官分限令 등 관련 규정도 동시에 개정되고 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2,390호(1920. 7. 28) 황실령 제5호 궁내관임용령 개정(1920년 7월 23일) ; 황실령 제6호 궁내관분한령 개정(1920년 7월 23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495호(1928. 8. 21) 황실령 제5호 궁내관관등봉급령 개정(1928년 8월 14일) ; 황실령 제6호 궁내관임용령 개정(1928년 8월 14일) ; 황실령 제7호 宮內官分限令 개정(1928년 8월 14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4,339호(1941. 7. 11) 황실령 제8호 궁내관관등봉급령 개정(1941년 6월 30일) ; 황실령 제9호 궁내관임용령 개정(1941년 6월 30일).

52) 『조선총독부 관보』 제1,153호(1916. 6. 8) 황실령 제1호 이왕직관제 개정(1916년 6월 3일)

53) 『조선총독부 관보』 제2,299호(1920. 4. 13) 황실령 제3호 이왕직관제 개정(1920년 4월 7일)
이와 함께 '이태왕'에 分屬하는 판임관을 폐지하고 '왕세자'와 '공족'에게 판임관을 분속하였다(『조선총독부 관보』 제2,299호(1920. 4. 13) 궁내성령 제4호(1920년 4월 8일)).

54) 『조선총독부 관보』 제495호(1928. 8. 21) 황실령 제4호 이왕직관제 개정(1928년 8월 14일)

은 건물이 이전, 또는 철거되고 1933년에는 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일반에 개방되는 등 궁궐도 축소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 이왕직의 역할은 '왕족'과 '공족'을 近侍하고 궁궐을 관리하는 데에서 제사와 陵墓·창경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도표 5> 이왕직의 직원 변화

이왕직관제	1910. 12	1915. 3	1916. 6	1920. 4	1926. 6	1928.8	1936. 3	1942, 3	1943. 7
5조(事務官)	36(奏任, 그 중 3인 勅任)	傳任 22인	17인	15인(勅任 2인) ***	10인(勅任 3인)	10인(勅任 2인)			
6조(贊侍)	12인(奏任, 그 중 2인 勅任으로 이왕과 이태왕을 모심)	傳任 12인	10인	6인 (이태왕→왕세자)	(왕세자 삭제)	삭제	-	-	-
7조(典祀)	8인(奏任)	傳任 5인	5인	4인	4인	傳任 5인 (奏任, 그 중 1인 칙임)	4인		
8조(典醫)	6인(奏任)	傳任 5인	5인	3인					
9조(技師)	3인(奏任)	傳任 2인	1인	1인				傳任 3인(奏任)	
(通譯官)					1인(傳任, 奏任) ****		2인		
(雅樂師長)									雅樂師長 (奏任) 1인 신설
(參奉)	75인(判任)	38인							
10조(屬)	90인(判任)	65인	49인	43인					
11조(典祀補)	25인(判任)	18인	17인						
12조(典醫補)	7인(判任)	5인		4인			1인		
13조(技手)	9인(判任)						10인		
			14조 掌侍司 설치(贊侍 1인이 掌侍司長)		贊侍 6인	삭제	參奉(判任) 雅樂師(判任) 신설		
14조(分屬) 李太王 (事務官)	7인	3인	(15조가 됨) 3인	(이태왕 삭제)	(왕세자 →故李王妃)	-			
(贊侍)	3인	5인	4인	-	-	-			
(典醫)	2인		2인	-	-	-			

(屬)	20인 *	12인	9인	-	-	-			
(典醫補)	2인			-	-	-			
왕세자 (事務官)	1인	1인	1인	1인	故李王妃 사무관 2인				
(贊侍)	1인	1인	1인	1인	-				
(典醫)	1인	1인	1인	1인	故李王妃 전의 1인				
(屬)	2인 *	3인	3인	3인	故李王妃 속 2인				
(典醫補)	1인	1인	1인	1인	-				
公族 (事務官)	각 2인	각 2인	각 1인	각 1인					
(屬)	각 5인	각 4인	각 3인	合 7인					

[비고]
* 1911년 5월 8일 宮內省令 제3호로 '이태왕'에 분속하는 屬을 19인으로, '왕세자'에 분속하는 屬을 3인으로 개정함(『조선총독부 관보』제208호(1911. 5. 12))
** 신설된 掌侍司에 贊侍 5인, 典醫 2인, 屬 및 典醫補 分屬
*** 1921년 3월 29일 황실령 제3호로 사무관을 10인으로 줄이고, 그 중 3인을 勅任으로 함(『조선총독부 관보』제2,591호(1921. 4. 4))
**** 1923년 6월 13일 황실령 제9호로 이왕직관제 9조에 통역관(傳任 1인, 奏任) 신설함(『조선총독부 관보』제3,256호(1923. 6. 19))

[出典]
長官, 次官, 事務官, 贊侍, 典祀, 典醫, 技師 등 奏任官 이상 : 『조선총독부 관보』 제106호(1911. 1. 9) 황실령 제34호 李王職官制(1910년 12월 30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790호(1915. 3. 25) 황실령 제5호 이왕직관제 개정(1915년 3월 18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1,153호(1916. 6. 8) 황실령 제1호 이왕직관제 개정(1916년 6월 3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2,299호(1920. 4. 13) 황실령 제3호 이왕직관제 개정(1920년 4월 7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2,591호(1921. 4. 4) 황실령 제3호 이왕직관제 개정(1921년 3월 29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3,256호(1923. 6. 19) 황실령 제9호 이왕직관제 개정 (1923년 6월 13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4,148호(1926. 6. 18) 황실령 제3호 이왕직관제 개정(1926년 6월 12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495호(1928. 8. 21) 황실령 제4호 이왕직관제 개정(1928년 8월 14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2,764호(1936. 4. 2) 황실령 제1호 이왕직관제 개정(1936년 3월 28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4,339호(1941. 7. 11) 황실령 제7호 이왕직관제 개정(1941년 6월 30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4,557호(1942. 4. 9) 황실령 제1호 이왕직관제 개정(1942년 3월 31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4,959호(1943. 8. 12) 황실령 제9호 이왕직관제 개정(1943년 7월 31일)
參奉, 屬, 典祀補, 典醫補, 技手, 등 判任官 : 『조선총독부 관보』 제106호(1911. 1. 9) 宮內省令 제16호 이왕직 판임관의 정원(1910년 12월 30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106호(1911. 1. 9) 궁내성령 제17호 이태왕에 분속하는 이왕직 정원(1910년 12월 30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106호(1911. 1. 9) 궁내성령 제18호 이왕직에 參奉 설치(1910년 12월 30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208호(1911. 5. 12) 궁내성령 제3호 1910년 궁내성령 제17호 개정(1911년 5월 8일) ; 『조선총독부 관

보』 제790호(1915. 3. 25) 궁내성령 제3호 1910년 궁내성령 제16호 개정(1915년 3월 19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790호(1915. 3. 25) 궁내성령 제4호 1910년 궁내성령 제17호 개정(1915년 3월 19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790호(1915. 3. 25) 궁내성령 제5호 판임 대우 궁내직원직제 중 개정(1915년 3월 19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1,153호(1916. 6. 8) 궁내성령 제3호 1910년 궁내성령 제16호 개정 (1916년 6월 5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1,153호(1916. 6. 8) 궁내성령 제4호 1910년 궁내성령 제17호 개정(1916년 6월 5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2,299호(1920. 4. 13) 궁내성령 제3호 1910년 궁내성령 제16호 개정(1920년 4월 8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2,299호(1920. 4. 13) 궁내성령 제4호 1910년 궁내성령 제17호 개정(1920년 4월 8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4,148호(1926. 6. 18) 궁내성령 제4호 1920년 궁내성령 제4호 개정(1926년 6월 14일) ; 『조선총독부 관보』 제2,764호(1936. 4. 2) 궁내성령 제2호 1910년 궁내성령 제16호 개정(1936년 3월 30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왕직의 경비는 '이왕'의 歲費로 충당하였는데, 조선총독부 예산에 따르면 이왕가세비는 경상부에서 1911년부터 1920년까지 150만엔, 1921년부터는 180만엔으로 고정되어 있었다.[55] 임시부까지를 포함한 이왕직 예산은 1912년에 164만엔, 1923년에 229만엔으로 그보다 좀더 많았던 것 같다.[56] 하지만 총세출예산이 1911년의 4천만엔에서 1920년경에는 1억엔, 1930년경에는 2억엔, 1940년경에는 8억엔으로 증가해갔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앙등 추세가 계속되었으므로 고정된 이왕가세비는 사실상의 감소를 의미하였다. 이왕직의 수입으로는 '이왕'의 세비 이외에 왕실재산에서 나오는 잡수입이 50만원 정도 있었다고 하며, 그 가운데 이왕직 직원의 봉급으로 3분의 1, 기타 비용으로 3분의 1 정도 지출되었다고 한다.[57] 한편 1915년 3월에는 '이왕가'의 재정을 공고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이왕직재산관리규칙'이 제정되기도 하였다.[58]

5. 맺음말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일의정서'에 황실과 영토의 보전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제시한 이래 계속해서 이를 약속해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었다. 1905년에 강압된 '을사조약'에는 영토의 보전에 관한 조항마저 들어있지 않았

55)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年度 참조
56) 『순종실록』 부록, 1912년 1월 31일 ; 1923년 3월 26일
57) 『삼천리』 10-5(1938년 5월호), 329면
58) 『순종실록』 부록, 1915년 3월 31일

고, 1910년 8월 '병합조약'으로 한국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대한제국을 병합한 일본은 천황의 詔書를 통해 대한제국 황실의 지위를 공포하면서 황제였던 순종을 '이왕', 전 황제 고종을 '이태왕', 황태자를 '왕세자'로 하는 등 '왕족'으로, 義親王 李堈과 興親王 李熹는 '공족'으로 각각 규정하고 모두 황족의 예우를 받도록 하였다. 국호가 조선으로 변경된 것과 함께 대한제국의 황실은 이제 일본 천황의 책봉을 받는 '조선왕실' 또는 '이왕가'로 격하되었다. 고종과 순종에게 내려진 '왕'이라는 지위와 '전하'라는 경칭을 보면 대한제국의 황실이 두 단계 낮아져서 일본 천황가에 방계로 편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의 황족과 달리 조선에만 존재하는 '왕족'과 '공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편입된 것이다. 한국의 종친과 고관 출신들은 '조선귀족령'에 의해 작위를 받았지만 이들 역시 일본의 華族과 구별되는 '조선귀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에 속하게 되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대해 동화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실상은 이러한 차별정책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1911년 2월에는 '이왕가'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이왕직이 설치되었다. 이왕직은 일본 황실업무를 담당하는 宮內省의 하부기구로 宮內大臣의 감독을 받아 조선 '왕족'과 '공족'의 家務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왕직은 대한제국기에 황실 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를 계승한 기구였다. 대한제국기의 궁내부는 수많은 부속기구를 거느린 방대한 조직으로 의정부, 또는 행정 각 부보다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합 이후 대한제국의 황실이 '이왕가'로 격하되면서 설치된 이왕직은 궁내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왕직관제'와 '이왕직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르면 이왕직의 주요 기능은 '왕족'과 '공족'에 대한 近侍, 왕실 조상에 대한 제사와 陵墓 관리, 궁궐의 정원과 창경원의 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 대한 관리로 한정되었다. 1919년 '이태왕'의 사망, 그리고 1926년 '이왕'의 사망은 이러한 이왕직의 기구, 직원, 기능을 더욱 축소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5개의 係로 출발한 이왕직의 기구는 1916년 한때 1司 7課로 확대되었지만 1920년에 들어와 1司 3課로 대폭 축소되면서 많은 직원의 감축을 가져왔고, 그 기능에서도 설립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왕족'과 '공족'에 대한 近侍 기능마저 거의 상실하고, 제사와

陵墓 관리, 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 대한 관리만이 주요 기능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후에도 명맥을 유지하는 이왕직 雅樂部의 활동과 더불어 '조선왕실'이 역사의 유물로 박제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필자 : 창원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주제어 : 大韓帝國 皇室, 朝鮮王室, 李王家, 李王職

투고일(2007.11.5), 심사시작일(2007.11.8), 심사종료일(2007.11.26)

<Abstract>

The Status of 'Royal-Family of Joseon' and the role of 'Office of Yi Royal-Famil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Lee, Yoon-sang *

With the outbreak of Russo-Japanese Wars in 1904, Japan continued to promise Korea that they would guarantee the preservation of royal-family and territory to make Korea their alliance since 'Korea-Japan Protocol'. However, it just proved a diplomatic rhetoric, since there were no clauses on the territory preservation in coerced 'Eulsa Treaty' of 1905, and with 'Annexation Treaty' of 1910, Korea became a colony of Japan.

After annexing Korea, Japan announced the status of Royal-Family of Daehan Empire(大韓帝國 皇室) through a royal rescript of an emperor. Japan changed the title of the Emperor Sunjong(純宗) into Yi King(李王), the former Emperor Gojong(高宗) into Yi Grand King(李太王), and the Crown prince(皇太子) into prince(王世子). In addition, they were described as 'Royal-Family(王族)', and Uichinwang(義親王) and Heungchinwang(興親王) as 'Pseudo Royal-Family(公族)'. It meant that with the change of the name of a country into Joseon, the Royal-Family of Daehan Empire was degraded into 'Royal-Family of Joseon(朝鮮王室)' or 'Yi Royal-Family(李王家)' which had to be installed by a Japanese Emperor. While it seemed that Royal-Family of Daehan Empire was incorporated into the collateral line of a Japanese royal family, the truth was that they were given a

* Associate Professor of Korean Histor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eparate title, since Royal-Family and Pseudo Royal-Family of Joseon were highly different from the Royal-Family of Japan(皇族; Kojoku). Even though the high officials of Korea were granted the title of aristocracy of Joseon(朝鮮貴族), they were just the aristocrats of Joseon different from those of Japan(華族; Kajoku). It meant that Japan seemingly pronounced the assimilation policy towards Joseon, but in actuality, they assumed discriminatory policy against Joseon.

In February of 1911, Office of Yi Royal-Family(李王職) was installed as an organization to handle the affairs related to Yi Royal-Family. This organization was descended from Gungnaebu(宮內府) of Daehan Empire which took charge of the affairs of Emperor family. The Gungnaebu of Daehan Empire took charge of many fields of royal and national affairs and thus the size was enormous. However, Office of Yi Royal-Family was forced to be reduced significantly. Furthermore, the death of Yi Grand King in 1919 and the death of Yi King in 1926 triggered the accelerated speed of reduction of the office. Thus, the office lost even the most important role of guarding royal-family, and the remaining role was just the management of royal tombs, zoo, botanical garden, and the museum. It was an example of stuffing Royal-Family of Joseon as a remain of history.

Key Words : Royal-Family of Daehan Empire(大韓帝國 皇室), Royal-Family of Joseon(朝鮮王室), Yi Royal- Family(李王家), Office of Yi Royal-Family(李王職)